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□ **개정이유**

- 자치단체별 형평성이 결여된 징수포상금 지급과 공적심사에 있어서 신뢰성 부족을 개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달된,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개선 방안을 우리 구에서 시행하기 위함.

□ **주요내용**

- 특별공적의 경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(안제2조 단서)
- 포상금 지급 기준하향 조정(안제3조)
-2년차 체납액 징수 : 징수액의 5/100에서 징수액의 3/100

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06.3.28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관련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포상금 지급시마다 제기되었던 형평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6. 6. 22

보고자 : 김 찬 재